

콘텐츠산업의 해외마케팅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콘텐츠진흥원”이라 한다)와 한국무역협회(이하 “무역협회”라 한다)는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해외마케팅 및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상기 기관들(이하 “양 당사자”라 한다)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콘텐츠산업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콘텐츠산업의 세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업무협약의 범위)

양 당사자는 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한국의 유망 콘텐츠와 제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속 업무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양 당사자는 콘텐츠산업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며, 국내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,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한다.
2. 양 당사자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시회, 컨퍼런스 등 각종 이벤트에 상호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3. 양 당사자는 콘텐츠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, 별도 합의하에 업무를 추진한다.

제3조 (협력사업 세부기준 및 시행절차 약정)

상기 제2조 협력사업의 세부기준 및 시행절차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 (정보 제공)

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, 고객 등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제5조 (신의성실의 의무)

양 당사자는 본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 (비밀유지의 의무)

양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, 배포 또는 유출시켜서는 안된다.

제7조 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해지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. 해지 통보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제8조 (협약의 변경)

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본 협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여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9조 (협약의 해석 등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,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.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당사자들이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6월 13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 장 홍 상 표

홍 상 표

한국무역협회

회 장 한 덕 수

한 덕 수